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5
----------	------

발의연월일 : 2024. 7. 12.

발 의 자 : 한준호 · 서영석 · 허종식
박홍배 · 김병기 · 홍기원
박상혁 · 한민수 · 강유정
정일영 · 안태준 · 조승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

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의 제목“(親族間의 犯行과 告訴)”를“(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고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의 제목“(親族間의 犯行)”을“(친족간의 범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前3條의”를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로 한다.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p> <p>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p> <p>②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二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p>	<p>제328조(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삭 제></p> <p>③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p> <p>-----</p> <p>-----</p>

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
-----.